

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 고시

「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, 시행규칙 제5조 및 「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,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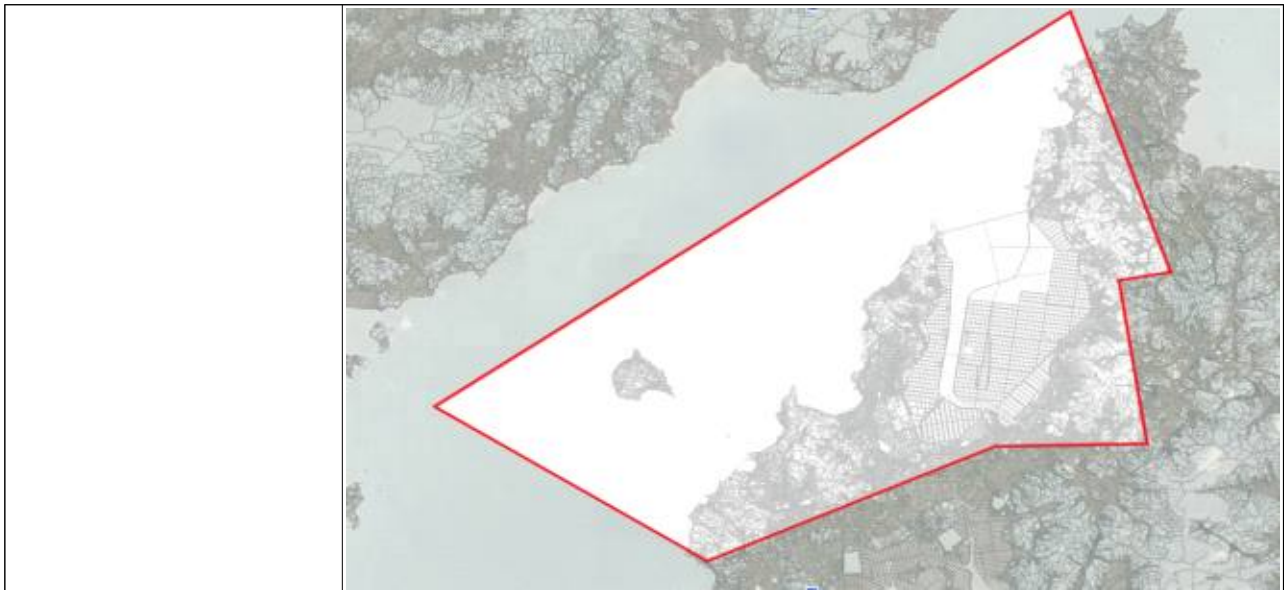
2024년 11월 22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실증사업구역의 명칭·위치·범위

○ 1단계(개활지 실증) 신규 지정

명칭	도심항공교통 실증 1단계 개활지 실증사업구역
위치	고흥항공센터, 고흥만 일원 34°43'04.00"N 127°14'36.00"E 34°38'05.00"N 127°16'30.00"E 34°37'55.00"N 127°15'31.00"E 34°34'52.00"N 127°15'57.00"E 34°34'50.00"N 127°12'59.00"E 34°32'27.00"N 127° 7'11.00"E 34°35'27.00"N 127° 1'36.00"E
범위 (면적 / 고도)	219km ² / SFC~650m(2,150FT MSL) 미만
지적도	



○ 2-1단계(수도권 아라뱃길 실증) 신규 지정

명칭	도심항공교통 실증 2-1단계 아라뱃길 실증사업구역
위치	드론센터 및 경인아라뱃길, 계양일원 37°34'21.41"N 126°36'37.47"E 37°35'16.22"N 126°39'08.91"E 37°35'16.56"N 126°41'11.58"E 37°33'15.90"N 126°46'50.27"E 37°31'18.45"N 126°45'43.94"E 37°31'42.57"N 126°44'36.56"E 37°33'56.15"N 126°42'23.10"E 37°33'55.82"N 126°40'19.35"E 37°33'29.80"N 126°40'23.08"E 37°33'10.80"N 126°39'39.26"E 37°33'04.15"N 126°37'17.26"E
범위 (면적 / 고도)	44.57km ² / SFC ~ 650m(2,150FT MSL) 미만
지적도	

2. 지정목적

-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·시험 등 실증을 위한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

3. 지정 연월일 및 기간

- 2024년 11월 22일 ~ 2025년 12월 31일까지

4. 유의사항

- 실증사업구역은 「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에게 적용이 가능한 규제 특례이며, 그 외의 자에 대해서는 규제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허용되지 않은 개인 또는 사업자가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내에서 도심형항공기 비행에 필요한 승인 및 인·허가 등을 받지 않고 비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 또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-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(☎044-201-4266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